

제 1249 호  
1986. 2.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 모 현  
 편집인 : 공 모 관 이 광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제	보도국장	공보국장	공보관	공 인 람

# 시 보

## 차 례

- ◎ 조 례
  - 제 2072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 ..... 3
  - 제 2073 호 : 서울특별시공업계 고등학교기제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 ◎ 고 시
  - 제 88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정정인가 ..... 4
  - 제 89 호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 ) 시행허가변경 ( 기간연장 ) ..... 6
  - 제 90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6
  - 제 91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7
  - 제 92 호 : 이촌제1어린이공원의 50 개소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 ..... 8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93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및지적승인 .....	10
제 94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통신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11
제 95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	12

◎ 공 고

제 9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 .....	12
제 98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완료 .....	13
제 100 호 : 도시계획사업 (소도) 실시계획공람 .....	13
제 10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공람 .....	15
제 10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공람 .....	17
제 10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공람 .....	18
제 10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공람 .....	21
제 105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완료 .....	25
제 106 호 : 전문건설업면허취소 .....	25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 2.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근

◎서울특별시조례제 207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사회교육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직무 )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에 대한 지도조언
3. 사회교육의 진흥에 대한 협의
4. 기타 사회교육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 구성 )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③서울특별시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정독도서관장이 및 사회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위원은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4 조 ( 임 기 )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 회의 등 )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조 ( 간사 및 서기 )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계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8 조 ( 수당과 여비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 2.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근

◎서울특별시조례제 2073 호

서울특별시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등”으로 한다.

제 3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제 3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정정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28호 (85.5.17) 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보인다.

1986. 2.1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 : 변경없음
- 나. 사업위치 : 변경없음
-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규모) : 변경없음
- 라. 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마. 사업기간 : 변경없음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조서 : 별첨
- 사. 인가내용 : 별첨인가조서 (도서생략)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 및 건물 조서

○ 정정인가내용

구 분	당 초						정 정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성 명	소유자주소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성 명	소유자주소
토 지	강서구 방화동	529 - 3	임 야	13	13	최일성 외 1인	경기도고양군 용강면현석리 58	강서구 방화동	503 - 3	건	10	10	미등기	
								강서구 방화동	505 - 3	건	43	43	파 명 평 환	경기도김포군양서 면방화리 205
건 물	소재지	지 번	구 조	지 적 (㎡)	면 적 (㎡)	소유자 성 명	소유자주소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 적 (㎡)	소유자 성 명	소유자주소
	강서구 방화동	562 - 2	주 택 목 조 초 가	36.36	28	권혁동	강서구공항동 45-11	강서구 방화동	562 - 2	주 택 목 조 와	36.36	30	권혁동	강서구공항동 45-11
	"	562 - 17	주 택 점 포 목 조 와	116.6	116.6	박주호	강서구방화동 568	"	562 - 17	주 택 점 포 목 조 와	67.34	67.34	박주호	강서구방화동 568
	"	562 - 17	주 택 점 포 목 조 와	67.34	45	박주호	강서구방화동 568	"	562 - 7	주 택 점 포 목 조 와	49.26	49.26	양승우	동작구상도동 2아 172 상도 아파트 6 동 305 호
	"	532 - 4	창 고 연 외 스 레 트	330.58	165.29	강서 단 위 농업 협 동 조합	강서구방화동 532-4	"	532 - 4	창 고 연 외 스 레 트	294	116	강서 단 위 농업 협 동 조합	강서구방화동 597-30
	"	532 - 4	수 위 실 연 외 스 레 트		25.45	"	"	"	532 - 4	수 위 실 연 외 스 레 트	24	24	"	"

제 1249 호

시 1986.2.18

26-5

2246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기간연장)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27 호 (84.11.23)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 허가된 다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업시행 허가변경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2.18.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동 103-4 일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건설(주) 대표 문경일
- 라. 사업시행면적 : 35,342㎡
- 마. 사업규모
  - 1) 건축면적 : 13,578.4㎡

가. 시설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1 류	10m	100 m	구로구고척동 256 의 51	구로구고척동 257 의 7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2) 건축연면적 : 28,375.4㎡
- 바.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1) 변경전 : 84.11.29-85.11.30.
  - 2) 변경후 : 84.11.29-86.12.31.
- 사.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 지적, 소유권권리명세 : 해당없음
-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 호 (86.2.3)로 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2.18.

서울특별시

<p><b>◎서울특별시고시제 91 호</b></p> <p><b>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b></p> <p>1. 서울특별시공고 제 40 호 (86.1.23) 로 공람공고한 계상국교진입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아래 사업내용과 같이 도시계획</p> <p>가. 사업내용</p>	<p>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2. 1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규모	착공일	준공예정일
상계동 449-53 외 19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시행	B = 20 m L = 225 m	86.1.31	86.12.31

<p>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자의 권리명세서 (별항)</p>	<p>5.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항)</p>
--	---

**토 지 조 서**

○ 계상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상계동 449-53	답	71	71	용산구후암동 38-4	윤덕수 외 3인	
" 449-40	"	1,204	1,204	"	"	
" 449-39	"	185	185	"	"	
" 453-3	전	233	233	동대문구휘경동 294-199	김찬호	
" 449-45	답	324	324	상계동 160	조영서	
" 453-4	전	54	54	동대문구휘경동 294-199	김찬호	
" 450-3	"	1,024	1,024	상계동 389-322	김희재 외 5인	

지 번	지 목	지 적	면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 외의 권 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명	
상계동 447-9	전	78	78	상계동 156-99	신두희	
" 447-10	"	3	3	"	"	
" 448-1	"	468	468	중계동 84	박수철	
" 447-8	"	56	56	중구인현동 2가 192-30	최경순	
" 446-1	도 로	1,795	52.5		서울시	
" 445-5	전	519	519	창동 644-43	김장호	
" 445-7	대	53	53	종로구종로5가104-2	현정희	
" 159-4	도 로	60	60		서울시	
" 166-1	전	278	278	종로구혜화동 5-51	남철우	
" 167-8	전	511	511	서대문구대현동 24	서일호	
" 167-10	"	38	38	동대문구답십리동 36-26	맹계순	
" 168-11	"	32	32	관악구신림동 118-20	김영옥	
" 168-6	대	6	6	쌍문동 315-186	외 3인 임영식	

\* 단, 전입면적은 도상 산출한 것임.

◎서울특별시고시제 92 호

이촌제 1 어린이공원의 51 개소조성  
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1. 용산구 이촌제 1 어린이공원의 51 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법 제 12 조(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2)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 하였

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각구청 공원녹지과 및 관찰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 2. 18

서울특별시 장

가. 이촌제 1 어린이공원의 51 개소 조성계획결정 총괄내역: 별첨

나. 이촌제 1 어린이공원의 51 개소 조성계획결정 지적승인 도면: 생략



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내역				
구 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52개소		43,348.8	
용 산	이촌제 1 어린이공원	이촌동 301-86	1,575	
"	한남제 2 어린이공원	한남동 1-32	469	
"	한남제 1 어린이공원	한남동 15-15	432	
성 동	성수 2 가 어린이공원	성수 2 가 327-3	198	
"	화양어린이공원	화양동 110-40	338	
"	성수 1 가 어린이공원	성수 1 가 656-1735	251	
"	성수 2 가 어린이공원	성수 2 가 179-5	331	
"	구의어린이공원	구의동 560-5	397	
"	행당어린이공원	행당동 산 30	1,000	
"	옥수어린이공원	옥수동 497-9	300	
"	광장어린이공원	광장동 387-1	325	
"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화양동 110-32	1,062	
"	성수 2 가 어린이공원	성수 2 가 199-4	284	
동대문	망우제 7 어린이공원	망우동 474-11	593	
"	이문제 4 어린이공원	이문동 264-181	1,656	
도 봉	창동제 6 어린이공원	창 3 동 449-103	266	
"	월계제 4 어린이공원	월계동 411-50	152	
은 평	역촌제 2 어린이공원	역촌동 39-2	947	
"	증산제 1 어린이공원	증산동 164-34	996	
서대문	홍제제 2 어린이공원	홍제 3 동 287-121	1,206	
"	천연어린이공원	천연동 산 4	617.4	
마 포	성사천어린이공원	성산동 199-11	166	
"	중동제 4 어린이공원	중 동 40-5	1,207.3	
"	중동제 3 어린이공원	중 동 36-34	123.3	
"	도화어린이공원	도화동 533	98.7	
강 서	방화제 4 어린이공원	방화동 569-14	252	
"	방화제 5 어린이공원	방화동 247-201	253	
"	신월제 1 어린이공원	신월동 569	1,911	

구 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강 서	방화제 6 어린이공원	방화동 558	294	
"	방화제 34 어린이공원	화곡동 994-5	969.6	
"	방화제 7 어린이공원	방화동 448-5	63	
구 로	가산어린이공원	독산 1 동 999-11	1,019	
"	남구로어린이공원	구로 4 동 745-74	724	
관 악	연주대어린이공원	신림동 231-6	251	
"	미림어린이공원	신림동 254-256	185	
"	미성어린이공원	신림동 762-2	159	
"	난우어린이공원	신림동 652-160	241	
"	오성어린이공원	신림동 635-104	225	
"	국지어린이공원	봉천동 635-429	1,650	
"	일선어린이공원	봉천동 1587-7	1,253	
"	예촌어린이공원	남현동 1085-1	1,553	
강 남	반포제 3 어린이공원	반포동 217	990	
"	역삼제 5 어린이공원	역삼동 611	1,650	
"	논현제 5 어린이공원	논현동 205-7	1,879.7	
"	서초제 11 어린이공원	서초동 706	990	
"	개포등어린이공원	개포동 190	4,793.8	
"	방배제 3 어린이공원	방배동 593-43	936	
"	방배제 11 어린이공원	방배동 178-45	165	
"	염곡제 2 어린이공원	염곡동 56-3	371	
"	염곡제 3 어린이공원	염곡동 53-3	306	
"	서초제 12 어린이공원	서초동 312	4,876	
강 동	마천제 3 어린이공원	마천동 128-2	368	

◎서울특별시고시제 93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승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

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4 항과 제 13 조

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2. 18  서울특별시장		
○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신설	수도	강서구 목동 산 12-3 일대	33,420	배수지
○ 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신설	수도	구로구 고척동 산 9 일대	29,560	배수지
○ 결정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4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통신시설)결정,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통신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 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제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4 항과 제 13 조 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6. 2. 18 서울특별시장		
○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기정	공용의청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73,594	폐지
변경	"	"	0	
신설	통신시설	"	73,662	
○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5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2.18

서울특별시장

○결.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공용의청사	강서구 목동 77-5	450.8	목4동사무소

○ 결정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9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549 호 (85.8.14)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5 호 (85.9.16)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같음함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임.

1986. 2.1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61-28의 10 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명지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시행면적 5,010.75 ㎡  
건물연면적 4,498.5 ㎡(지하 1층, 지상 3층)
- 라.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년월일 86. 2.  
준공예정년월일 86.12.30

마.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유 강 근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서울특별시공고제 98 호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시 행 완 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5 호 (85.5.7)로 사업시행 허가 변경된 구로구 고척동 190-2 의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 정류장 )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 정류장 ) 완료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2.18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지 : 구로구 고척동 190-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다. 시행면적 : 3,365 ㎡  
 라. 시행자 주소·성명 : 구로구 고척동

192 신원교통(주) 대표 정찬문

마.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변경전 : 226.80 ㎡

변경후 : 307.80 ㎡

바. 시행기간 : 85.5.15-86.2.7.

◎서울특별시공고제 100 호

도시계획사업 ( 소도 )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고 제 486 ( '82.11.30 )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6.2.18

서울특별시장

- 공 략 개 요 -

- 1) 사업의시행지 : 서대문구 연희동 126 의 4 - 128 의 19 간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개설 및 하수도 시설

<p>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math>B=8m</math>, <math>L=180m</math> 하수도(<math>D=450\%</math>) <math>L=210m</math></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p> <p>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6.12.31 일까지</p> <p>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외소재지, 지번, 지목별 소유자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p>	<p>7) 보상계획</p> <p>가. 대상물건 : 별첨</p> <p>나. 보상시기 : '86.1 - '86.12.</p> <p>다. 보상절차 : ◦ 감정평가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후 취득 ◦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조 2항 및 제 77조에 의거 강제수용</p> <p>라. 보상지급방법 : ◦ 토지 :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 ◦ 건물 : 계약후 70%철거완료후 전액지급</p> <p>8) 관계도면 : 생략</p>
--	--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성명	
연희동 산 89-9	임야	617	이 종 립	
" 127-3	대지	5		
" 127-4	"	114.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128-1	도로	11.2	이 종 립	
" 128-33	대지	180.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128-34	"	16.5	신정식의 5인	

건 물 조 서

물건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건축면적 (㎡)	수용면적 (㎡)	관계인 주소성명	
연희동 128-12	세멘벽돌조 및연와코스라브위세면와즙	주택	지층	49.68	27	연희동 128-12 신정식의 5인
			1층	115.79		
			2층	67.62		
			계	233.09		
연희동 126-4	연와코스레트즙	주택	지층	16.53	1.5	강남구 반포동 1241 최청림 반포아파트 94-100
			1층	77.82		
			2층	91.24		
			계	185.59		

◎ 서울특별시공고제 10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665 호(85.10.5)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753 호(85.11.4)로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 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6. 2.1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홍은3동  
273 의 7-377 의 67 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B=8 m,  
L=230 m 암거(1.3 m X 1.3 m),  
L=60 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6.12.31 일까지

5.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서대문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물건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86.2.- '86.12.

다.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 계약체결후 취득

○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77 조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

라. 보상금지급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

○ 건물: 계약과 동시 70 %, 실거 완료후 잔액지급

마. 관계도면: 생략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당초지번	지목	면적	수 지번(분할)	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1	홍은동산26-153	임		홍은동 297-1	745	홍은동 201	이우영
2	산 26-154	임		297-2	18	"	이우영

일련 번호	당 초 지 번	지 목	면 적	수 용		소유자주소성명	
				지 번(분할)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3	홍은동 272	대	129	홍은동 272-1	2	홍은동 271-29	박명준
4	" 281	대	774	" 281-13	563	201	이우영
5	" 281-4	대	774	" 281-13	4	홍계동 270-74	정종현
6	" 281-12	도	220	" 281-15	14	201	이우영
7	" 275-43	도	30	" 275-79	12	서 울 시	
8	" 280	대	376	" 280-16	20	281	이진섭
9	" 278-1	전	63	" 278-9	15	281-1	"
10	" 278-2	대	165	" 278-10	4	연희동 170	권홍철
11	" 278-3	대	169	" 278-11	4	"	박신좌
12	" 278-4	대	60	" 278-12	5	녹번동 109-27	박관모
13	" 2119	대	50		50	279	이기호
14	" 275-49	도로	106		85	서 울 시	
계					1,551		

수용면적 1.551-97 = 1.454 (시유지 97 m<sup>2</sup>)

건 물 조 서

(홍연국교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당 초 지 번	건물 면적	유.무 허가	수 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 외의 권 리명세
				지 번(분할)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1	홍은동 279	30.02	유	홍은동 279	30.02	홍은동	진병조	
2	홍은동 278-2		무	홍은동 278-10	16.1	연희동 170		무허가 건물대 장미등재
3	홍은동 281-4	99.17	무	홍은동 281-13	75.6	홍은동 281-4	이진섭	
계					121.72			

수용면적 유 : 30.02  
무 : 91.7

계 : 121.72 m<sup>2</sup>



**○ 서울특별시공고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  
계 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69.1.18)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 고 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6.2.1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홍은 3 동 356 의 68-361 의 25 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B = 6 m L = 130 m 하수도 D = 600 mm L = 125 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6. 12.31 일까지

5.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별 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물건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86.2 - '86.12.

다. 보상절차

-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77 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

라. 보상금지급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
- 건물: 계약과 동시 70% 절거 완료후 잔액지급

마. 관계도면 생략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소유자주소성명
			지 번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홍은 3 동 356-1	학교용지	18,960	홍은 3 동 356-68	112	중구서소문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소유자 주소성명
			지 번	면적(㎡)	관계인 주소성명
홍은 3동 356-26	구 거	2,702	홍은 3동 356-67	55	서울특별시
• 357-1	전	63	• 357-9	15	남가좌동 산 4-2 학교법인 명지학원
• 361-2	전	368	• 361-2	368	서울특별시
• 361-3	학교용지	1,041	• 361-41	228	중구서소문동 58-17 학교법인 명지학원
• 361-24	전	501	• 361-45	186	북가좌동 339-30 김말혜
• 361-25	대	339	• 361-43	7	의 2인

실보상면적 971 ㎡ - 서울시 (423 ㎡) - 명지학원 (355 ㎡) = 193 ㎡

◎ 서울특별시공고제 10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  
계 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69.1.18)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 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 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한다.  
1986.2.18.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의시행지: 서대문구북가좌 2 동 75 의 208-113 의 92 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B=8 m, L=245 m  
하수도 (D450 ㎜ - 600 ㎜), L=260 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6 12.31 일까지
5.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물건조서참조  
나. 보상시기: '86.2 - '86.12.

<p>다. 보상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li> <li>○ 협의분양시 토지수용법 제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li> </ul>	<p>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p> <p>라. 보상금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계약과동시 전액지급</li> <li>○ 건물: 계약과동시 70%, 철거완료후 잔액지급</li> </ul> <p>8. 관계도면: 생략</p>
--	--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소유자 주소성명	
			지 번	면적	관 계 인 주소성명	
북가좌동 75-129	대	106	북가좌동 75-129	100	동작구노량진동산 56	유 경
• 75-157	대	3	• 75-157	3	• 56-1	유 흥
• 75-165	대	13	• 75-165	13	•	•
• 75-166	대	10	• 75-166	10	•	•
• 75-167	대	17	• 75-167	17	서대문구북가좌동 75-101	이경호
• 75-168	대	36	• 75-168	36	동작구노량진동산 56-1	유 흥
• 75-208	대	69	• 75-208	69	서대문구북가좌동 118-13	정만오
• 75-210	대	99	• 75-210	99	• 75-128	오용운
• 75-213	대	13	• 75-213	13	동작구노량진동산 56-1	유 흥
• 75-214	대	56	• 75-214	56	동작구노량진동산 56-1	•
• 75-215	대	10	• 75-215	10	•	•
• 75-216	대	60	• 75-216	60	서대문구북가좌동 75-160	김혜경
• 75-217	대	66	• 75-217	66	동작구노량진동산 56-1	유 흥
• 75-218	대	73	• 75-218	73	•	•
• 75-219	대	76	• 75-219	76	서대문구북가좌동 75-163	이질녕
• 75-221	대	102	• 75-221	102	• 75-164	김성광
• 75-224	대	66	• 75-224	66	• 75-101	이경호
• 113-6	도로	69	• 113-5	69	용산구서계동 295-5	김수돈외1인
• 113-11	대	83	• 113-11	83	서울특별시	
• 113-17	대	760	• 113-17	760	마포구성산동산 26	김갑순외1인
• 113-74	도로	321	• 113-74	321	서대문구북이현 2동 156-22	이수성
• 113-87	도로	7	• 113-84	7	서울특별시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번	면적	관계인 주소 성명		
북가좌동 113-88	대	17	북가좌동 113-88	17	북가좌동 11-11	육강련	
" 113-91	대	10	" 113-91	10	서울특별시		
" 113-92	대	46	" 113-92	46	서대문구북가좌동 113-71	김일성	
" 113-94	대	53	" 113-94	53	서울특별시		

실보상면적 = 2,235 ㎡ - 서울특별시 (153 ㎡) = 2,082 ㎡

건 물 조 서

물 건 지 위 치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	수용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북가좌동 75-101, 167	세멘벽돌조	주택	1층 59.34 계 59.34	59.34	북가좌동 74-94	이백래
"	"	주택	1층 59.34 계 59.34	59.34	" 74-94	이백래
75-111, 129	"	주택	1층 68.33 계 68.33	37.17	" 75-128	오용웅
75-128	"	주택	1층 45.82 계 45.82	26.46	" 74-94	이백래
75-158	"	주택	1층 45.82 계 45.82	24.36	" 75	조성문
75-160	"	주택	1층 59.34 계 59.34	25.92	" 74-94	이백래
75-161	"	주택	1층 59.34 계 59.34	24.96	" 74-94	이백래
75-162	"	주택	1층 68.33 계 68.33	39.04	" 75-163	김갑민
75-163	"	주택	1층 68.33 계 68.33	43.28	" 75-164	김성광
75-164	"	주택	1층 68.33 계 68.33			

물건지위치	구 조	용도	건축면적 (㎡)	수용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북가좌동 113-3	철근콘크리트 평육개	점포 및 주택	지층 74.88 1층 82.98 2층 94.12 계 251.98	27.28 × 3 = 81.84	용산구서계동 238-9 김수돈
북가좌동 113-47	연와조 세면와즙	주택	1층 33.06 계 33.06	3.92	북가좌동 113-47 황수일

실보상면적 = 425.63 ㎡

◎서울특별시공고제 104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9 호('83.1.19)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6. 2. 18.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 연희동 519 의 96-525 의 4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 = 8 m, L = 300 m 하수도(D = 450 ㎜), L = 305 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7.12.31 일까지
5.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보상계획:
  - 가. 대상물건: 별첨 물건조서 참조
  - 나. 보상시기: '86.2 ~ '86.12
  - 다. 보상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 계약체결후 취득</li> <li>○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77 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li> </ul>	<p>라. 보상금 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li> <li>○ 건물 : 계약과 동시 70%, 철거 완료후 잔액지급</li> </ul> <p>마. 관계도면 : 생략</p>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당초지번	지목	면적	수용		소유자주소성명	
				지번(분할)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1	연희동 519-17	대	7	연희동 519-27	7	연희동 519-27	조 병 헌
2	519-59	대	23	519번지	23	좌 동	"
3	519-54	대	69	519-54	69	연희동 519-54	유 인 배
4	519-55	대	96	519-189	77	" 519-55	김 유 환
5	519-56	대	165	519-190	123	순장군 적성면 북리 488 번지	시 김 병 진
6	519-18	잡	264	519-191	89	서울시	
7	519-57	대	86	519-192	55	연희동 519-57	김 부 풍
8	519-19	대	116	519-193	77	" 520-4	이 경 현
9	519-160	대	76	519-194	51	" 19	이영부의5인
10	519-161	대	93	519-195	62	" 519-195	임 정 순
11	519-162	대	89	519-196	62	홍제동 286-16	노 종 근
12	519-163	대	112	519-198	65	좌 동	모 영 순
13	519-164	대	66	519-200	33	좌 동	민 창 식
14	519-52	대	56	519-202	25	연희동 519-19	"
15	519-53	대	96	519-203	48	좌 동	김 준 건
16	519-62	대	99	519-204	62	좌 동	김 영 선
17	519-16	대	139	519-205	85	좌 동	김 정 주
18	519-58	대	102	519-206	76	좌 동	"
19	519-24	잡	60	519-207	36	연희동 519-4	황 용 환
20	519-153	대	83	519-208	53	강서구신정동 17 아파트 87 동 57 호	장 동 일 외 2 인

일련 번호	당초지번	지목	면적	수 용		소유자주소성명	
				지번(분할)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21	연희동 519-154	대	83	연희동 519-200	53	좌 동	김 영 선
22	519-150	잡	46	519-210	4	좌 동	변 을 구
23	519-168	대	60	519-211	24	좌 동	김 한 동
24	519-169	대	83	519-212	3	좌 동	김 계 일
25	519-20	잡	717	519-213	4	서 울 시	
26	"	잡	717	519-214	177	서 울 시	
27	519-151	대	307	519-215	161	연희동 519-5	이귀성의 1인
28	519-25	대	112	519-217	31	좌 동	최 기 한
29	519-187	대	112	519-218	2	연희동 519-144	최 성 한
30	519-26	대	258	519-219	7	좌 동	장 영 선
31	519-22	대	66	519-220	7	성북구삼선 3동 산 48번지	김 원 응
32	526번지	잡	6,228	526-3	141	국	
33	524-1	잡	760	524-14	388	서 울 시	
34	524-12	잡	29	524-17	13	서 울 시	
35	525-1	대	116	525-9	24	인천시북구관 극동 244	라 한 군
36	529-22	대	367	529-29	244	마포구아현동	신태균의 2인
37	529-23	대	33	520-30	26	경기도안양시 안양동 867	서 영 태
38	529-14	대	40	529-31	30	연희동 529-3	오 연 중
39	529-16	대	13	529-32	3	동교동 137-26	신년의 3인
40	529-24	대	53	529-33	37	좌 동	윤 상 수
41	529-28	대	53	529-34	36	좌 동	임 종 행
계			11,463		2,623		
수용면적 : 2,623 - 812 = 1,811㎡(국공유지 : 812㎡)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당 초 지 번	건 물 면적	유·무 허 가	수 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 번 (분할)	면 적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연회동 519-55	52.33	유	연회동 519-189	35.25	연회동 519-55	김 우 규
2	519-57	28.66	유	519-192	19.86	519-57	김 봉 선
3	519-160		무	519-194	25	520-19	이영복외5인
4	519-161	42.21	유	519-195	24.8	519-19	김 명 보
5	519-162	36.36	유	519-196	24.4	홍계동 286-16	노 종 근
6	519-163	29.75	유	519-198	29	연회동 519-163	오 영 순
7	519-164		무	519-200	23	519-164	민 장 식
8	519-53	41.65	유	519-203	22.2	519-53	김 준 건
9	519-62	31.31	무	519-204	33	437-19	김 영 선
10	519-153	38.91	유	519-208	17.9	519-153	이 진 용
	519-154			519-209		51-154	
11	519-150	28.93	유	519-210	13.5	519-150	변 을 규
		물치 0.79					
12	519-168	43.34	유	519-211	20.4	519-168	오 명 섭
		물치 0.89					
13	519-151		무	519-161	34.2	519-5	이귀성의 1인
14	519-25		무	519-217	16.4	519-25	최 기 한
15	519-26	지하 6.48	유	519-219	16.18	519-26	강 영 선
		1층 85.62					
16	519-22	36.97	유	519-220	8.4	519-22	김 원 응
17	529-23	지하 6.61	유	529-30	39.61	529-23	장 준 욱
		1층 40.20					
18	529-14	지하 6.61	유	529-31	21.91	529-3	오 연 풍
		1층 38.84					
19	529-24	물치 3.70	무	529-33	24.02	529-34	황 용 환
20	529-28	지하 6.61	유	529-34	23.01	529-28	임 증 재
		1층 42.05					
21	519-173		무	519-173	4.0	519-173	
계	수용면적	: 476.04					



◎서울특별시공고제 105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84. 3.7) 로 시행허가된 도봉구 미아동 52-1 도시계획사업 (시장)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2.1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미아동 52-1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장)  
 명칭 : 방천시장 증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 (1)대지면적 : 5,180 ㎡
- (2)건축 (증축) 면적 : 564.35 ㎡
- (3)연 (증축) 면적 : 2,753.01 ㎡  
 (지하 1층, 지상 4층)

라.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도봉구 미아동 52-1

성명 : 울복상사주  
 대표이사 김을복

◎서울특별시공고제 106 호

전문건설업 면허취소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6. 2.18.

서울특별시장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 유	처분내용	근거법규
설비 (12-254) 상하수도 (13-112)	정길건설(주)	이명화	강남구 서초동 1063	면허기준 미달	면허취소	건설업법 제 52 조 및 54 조

사 령

◎ 1986 년 2 월 18 일자

발령제 5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을삼	중구부청장	지방부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동훈	용산구부청장 지방부이사관	중구부청장	지방부이사관
김치운	성동구 "	구로구 "	"
이경배	동대문구 "	용산구 "	"
서정희	도봉구 "	서대문구 "	"
김창근	은평구 "	내무국	"
황철민	서대문구 "	"	"
이기재	마포구 "	"	"
황병주	구로구 "	"	지방공업부기감
김문종	강남구 "	"	지방부이사관
안식환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	마포구부청장	"

◎ 1986년 2월 18일자

발령제 6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형원	내무국	성동구부청장	지방부이사관
권이금	"	은평구 "	"
고오석	"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

서울특별시장